

---

##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

### Autobahn 이용약관

---

#### 한글본 (KOREAN TEXT)

AUTOBAHN 플랫폼, AUTOBAHN 톨바 및 앱 마켓 온라인(총칭하여 이하 “본 웹사이트”라 합니다)은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제14조에 보다 상세히 기재됨)(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귀하(“사용자”)가 귀하의 고용자, 타인 또는 조직(“고객”)을 대리하여 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가 위 고객으로부터 고객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본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며 다음과 같은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에 동의할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다른 의미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사용자와 고객을 총칭합니다.

귀하가 본 웹사이트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하였거나, 본 웹사이트의 기능 및 비즈니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즉시 본 웹사이트의 사용을 중지하고 접근권한 및 교육에 관하여 은행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제1조 접근 및 이용 관련 의무

(1) 본 웹사이트는 암호로 보호되고 있으며, 고객 및/또는 사용자에게는 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식별정보가 부여되고 이 식별정보에는 사용자명, 암호, 스마트카드, 보안 ID 토큰(secure ID tokens), 토큰(token), 보안표(security slip) 및 암호화 키(이하 “사용자식별정보”라 합니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사용자식별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또한 본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전에 본 웹사이트의 모든 특징 또는 구성요소의 기능, 절차 및 효과를 숙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고객(사용자 제외)은 (i) 은행이 본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고객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아닌 다른 자(통합서비스 제공에 연관된 자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게 사용자식별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ii) 다른 제3자의 본 웹사이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보안절차를 개발 및/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웹사이트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됩니다.

(5) 만약 해당 사용자식별정보를 부여할 때 지정되거나 은행과 서면으로 합의된 위치 및 관할국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다른 위치 또는 관할국가에서 본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6)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는 법적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일부 정보는 특정 국가 거주자에게만 제공 가능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웹사이트에

접근한 장소의 관할국가에서 부과되는 요건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7) 고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에 즉시 통보합니다.

- (i) 사용자식별정보의 분실 또는 도난 시;
- (ii) 사용자식별정보의 비밀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iii) 사용자식별정보 또는 본 웹사이트가 권한 없이 사용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위 (i) 내지 (iii)을 통보한 경우, 은행은 그 이후에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8) 고객은 은행이 명시하거나 장래 명시할 수 있는 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제3자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제3자가 명시하는 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고객은 본 웹사이트의 접근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마련 및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제3자(제3자 서버를 통해 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하는 경우)와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또는 본 약관상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 및 서비스 제공업체(본 사이트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위한 은행의 통신수단과 관련하여, 은행에 서비스를 관리, 운영, 소유, 라이선스하거나 제공하는 회사)는 위와 같은 장비, 소프트웨어 또는 약정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진술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i) 본 웹사이트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ii) 은행이 이용하는 통신수단과 관련하여 은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 운영, 소유, 라이선스 또는 제공하는 회사("서비스 제공업체")는

(10) 고객은 다음의 방식으로 본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 (i) 고객에게 적용되는 규제당국의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위반되거나;
- (ii) 어떠한 방식으로든(본 웹사이트에 자료 게시가 가능한 부분에 자료를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비방, 음란, 모욕, 저속 또는 협박적이거나,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기타 위법 또는 불법적인 방식이거나;
- (iii)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파괴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본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 (iv)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로 하여금 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프레임(frame) 또는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text link) 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하거나; 또는
- (v) 어떠한 방식으로든 은행이 승인하지 않거나 본 약관 또는 은행과의 기타 약정을 위반하는 방식

(11) 고객(사용자 제외)은 사용자들에게 본 약관에 따른 고객의 의무(적절한 거래를 스스로 결정할 의무 등)를 교육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사용자들이 본 약관에 따른 고객의 의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국제, 법률, 규정, 규칙, 당국의 정책 및 내부 정책을 준수하도록 감독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12) 고객은 각 사용자가 본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체결·이행할 수 있는 권능 및 권한을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를 체결·확인하도록 권한을 받은 자들만이 본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해당 자가 거래 체결·이행을 위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i) 해당 자가 본 약관 상의 사용자이자 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경우
- (ii) 해당 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식별정보를 사용하여 은행 앞으로 주문을 제출하였을 경우.

또한, 은행은 적법하게 체결된 위임장 또는 해당 자의 권한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정황 및 증빙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13) 은행은 고객, 사용자 또는 고객의 수권 서명인이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동의, 통지, 지시 또는 기타 의사 전달을 별도의 조사 없이 신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의 정확성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14) 은행은 수시로 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방법, 본 웹사이트를 통한 특정한 유형의 주문 제출 방법, 또는 본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특정 유형의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교육 자료, 지침 또는 기타 정보(총칭하여 “보조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위 보조 자료가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본 약관이 수시로 수정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위 보조 자료 및 본 약관(본 약관의 부록에 포함된 조건 포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5) 위 제10항 (i)호 또는 본 약관의 다른 조항과 관련하여 방식의 제한 없이, 고객이 규제당국의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해 거래 또는 거래의 목적과 관련한 문서 및/또는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법률, 규정 또는 규칙 일체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사용자는 본 웹사이트가 고객이 상업/거래 기관임을 조건으로 사용자로서만 사용되도록 제공된 것임을 알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행위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 제2조 웹사이트에 대한 권한 및 접근 부여

(1) 은행은 고객에게 본 약관에 따라 본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제한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은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권한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본 웹사이트(또는 그 일부)를 변경, 중지, 해지, 제한 또는 중단하거나,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 정보, 또는 기능을 변경, 중지, 해지, 제한 또는 중단하거나 고객의 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변경, 중지, 해지,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i) 은행이 고객에게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아래 ①내지 ③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함)

- ① 고객이나 고객이 속한 그룹사에 대한 갑작스럽거나 지속적인 재무상황의 부정적 변동
- ② 고객이나 고객이 속한 그룹사의 평판이나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갑작스럽거나 중대한 부정적 사유 발생
- ③ 위 사항들에 준하는 DB 내부적 긴급상황의 발생

(ii)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통보를 요하지 않음.

- ① 은행 또는 고객의 손실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자연재해, 전쟁, 통신 인프라의 갑작스러운 고장 등 도이치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어려운 경우)②보안상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 ③본 웹사이트 및/또는 어떤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다른 시스템에 대하여 유지, 업그레이드 또는 보수 작업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금융시장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고객이 은행의 거래한도를 넘거나 본 약관에서 명시된 권한을 넘어 악의적으로 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⑥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일체의 국내외 법령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예: 자금세탁 혹은 테러행위 등에

연루되어 도이치은행이 즉시 거래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

⑦ 은행이 고객의 지시를 받은 경우

다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신속하게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내용과 함께 거래와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은행의 연락처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고객은 본 웹사이트에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 제3조 지식재산권

(1) 본 웹사이트는 제3자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자료 및 기타 콘텐츠(이하 “제3자 콘텐츠”라 합니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라 함은 스크린을 통해 보여지는지 또는 다른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그때그때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 콘텐츠 및 서비스(제3자 콘텐츠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포함합니다.

(2) 본 웹사이트는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고객은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은행 및/또는 해당 제3자가 본 웹사이트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권을 보유함을 인정합니다. 본 웹사이트의 이용은 본 웹사이트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에서 허용되었다고 명시된 사항들이 제3자 콘텐츠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고객이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은행에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자료 및 기타 콘텐츠(이하 “기고물”이라 합니다)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은행의 자산이 됩니다. 법률 또는 본 약관상 명백히 달리 규정되거나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기고물에 관한 어떠한 비밀유지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본 약관에서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은 고객에게 본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은행의 상표, 서비스표, 로고, 트레이드드레스(상품 외장), 슬로건,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및/또는 웹사이트(총칭하여 “은행 지식재산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은행이 보유하는 은행 지식재산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또는 관련 등록사항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5)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거나, 고객이 본 약관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열람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i) 본 웹사이트를 전부 또는 일부 복사하는 행위(다만, 재난 시 복구 용도로만 백업 사본을 제작하는 경우 제외)

(ii) 본 웹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 복제, 그로부터 파생물 생성, 전송, 판매, 공급, 임대, 임차, 서브라이센스, 시분할 공동사용(time-share),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남용하는 행위

(iii) 다른 제품에 본 웹사이트를 끼워 넣는 행위

- (iv) 시분할 공동사용 협정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 (v) 본 웹사이트에 어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호출된 함수(function calls) 또는 기타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s)를 생성하는 행위
  - (vi) 은행 또는 은행의 공급업체의 저작권 표시를 제거하거나 잘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
  - (vii) 은행 또는 은행의 제3자 공급업체들의 상표, 서비스표, 도메인 명, 로고 또는 기타 식별자를 사용하는 행위
  - (viii)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웹사이트의 소스코드를 분해하여 모방하거나(reverse engineer), 압축을 풀어 추출하거나(decompile), 분해하거나(disassemble) 또는 접근(access)하는 행위
- (6) 본 웹사이트의 이용을 위해서 수출통제 또는 규제가 적용되는 암호화 기술의 공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i)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하에, (ii) 모든 수출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iii) 목적지 또는 사용지 국가 법률을 준수할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암호화 기술을 제3자에게 재공급하거나 재수출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자문/권유의 미제공, 가격 및 거래**

(1) 별도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있거나,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고객과 은행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되는 다른 약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i) 본 웹사이트의 어떠한 내용도 은행의 추가 조치 없이 고객이 수락하면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청약의 의미하지 아니하고; (ii) 은행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본 웹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문(거래의 체결, 법률, 조세 또는 회계 자문, 또는 증권, 투자 또는 본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의 적정성 또는 수익성과 관련된 자문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iii)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재무자문 또는 증권이나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 유인, 권유 또는 추천을 의도하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객의 특정 투자목적, 재무상태 또는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 제공되지 않으며; 또한 (iv) 고객은 투자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정 투자목적, 재무상태 및 요구를 반영하는 독자적 재무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는 고객의 목적을 위하여 완전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가격은 오로지 참조용이며 고객과의 거래 체결을 위한 청약 또는 계약 체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i) 거래의 체결 또는 (ii) 기존 거래를 수정, 연장 또는 통합 하기 위한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이 명시한 지시 전송 방법을 통하여 본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은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고객의 제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는 은행이 고객의 청약을 수락하는 시점에 체결(또는 수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본 웹사이트 또는 기타 전자적 통지를 통해 고객 제안 수락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제안을 제출하였음에도 신속히 은행으로부터 거래 체결(또는 경우에 따라, 수정)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은행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3)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의 가격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의 결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은행의 부정확한 가격의 전달로 인하여 고객이 거래를 체결하려는 가격이 거래 체결 시점에 해당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은행은,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호 간의 대가 또는 위약금의 지급 없이 해당 거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일방 당사자는 거래를 체결하는 일자에 타방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단,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 취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는 제외함).:

(i) *독자적 판단*.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거래가 적정 또는 적절한지에 관하여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선택한 자문인들의 조언에 기반하여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방 당사자는 거래의 제반 조건과 관련된 정보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해당 거래 체결에 대한 투자 조언 또는 권고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타방 당사자와의 (서면 또는 구두) 의사 교환을 해당 거래 체결에 대한 투자 조언 또는 권고로서 의존하지 아니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어떠한 (서면 또는 구두) 의사 교환도 해당 거래의 예상 실적에 대한 확약 또는 보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ii) *평가 및 양해*. 일방 당사자는 (스스로 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당 거래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거래의 조건 및 위험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의 위험을 수용할 능력이 있으며 그 위험을 수용합니다.

(iii) *당사자들 지위*. 타방 당사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의 수탁자 또는 자문인으로 행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b) 고객은 은행에 대하여, 각 거래체결일에 거래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관계 법령(개정 사항 포함)상 요구되는 인허가 및 승인·동의 및 법인의 능력, 제반 인허가 및 승인·동의를 적법하게 보유한 거래를 체결하며, 법률 또는 모든 제반 규칙 및 절차(고객의 거래 체결에 적용되는 관련 외환 관리 및 외국 무역 규정을 포함)가 준수되었음을 진술합니다. 은행이 본 조항에 언급된 사항들에 대하여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본 조 진술 사항들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 및/또는 은행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은행에게 제공합니다.

## 제5조 관련 지위의 공개



은행, 서비스제공업체 및 이들의 임·직원들은 본 웹사이트에서 논의하는 회사, 기관, 금융상품이나 관련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거래하거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상당한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또는 시장 조성자, 고문, 중개인, 상업은행가 및/또는 투자은행가로서 행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고객들에게 또는 고객들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거나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본 웹사이트상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참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본 웹사이트상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에 의거하여 행동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본 웹사이트상에 공개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스스로의 계산으로 상품(또는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할 수 있고, 상품(또는 관련 파생상품)에 있어 소유자의 지위를 보유할 수 있으며, 본 웹사이트에서 언급되는 상품(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정보보호

(1) 정보보호 관련 법령 목적상의 데이터 관리자는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입니다. 은행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8층에 소재한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은행은 사용자에 관한 개인정보(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은행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함)를 사용자의 동의 하에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위하여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i)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고객이나 사용자와 은행의 일상 영업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함); (ii) 본 웹사이트 방문 페이지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iii)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은행의 업무를 감독 및 분석하기 위한 경우; (iv)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범죄 예방 포함). 만약 사용자가 은행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필수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해당 사용자에게 본 웹사이트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은행은 민감한 개인정보(민족적 출신, 종교 또는 의료기록)를 입수하거나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은행에 서면으로 달리 통지하지 않는 한, 은행은 해당 정보가 제공된 용도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은행 및 서비스제공업체는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가 사용자에 관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i) 관계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ii) 관계 법률 상 대중에 대한 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iii) 사용자가 요청 또는 동의한 경우.

(5)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 없이 (i)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수탁자)나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의 대리인 자격으로 행위하는 자 (해외 소재 수탁자 혹은 대리인을 포함함), (ii)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가 본 약관에 따른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자(다만, 사용자에게 양도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야 함)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 등이 신용제공 여부의 결정을 내리고, 사기적 거래사고를 줄이며, 신용, 사기방지 또는 신용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원을 제공하는 인가된 신용조회기관이나 기타 단체에게 사용자에게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해당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은행에 대하여 은행이 사용자에게 관하여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접근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사용자가 위 언급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용자는 은행에 서면으로 연락을 해야 하며, 은행은 사용자의 요청에 응함에 있어 은행에게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은행 및 서비스제공업체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본 제6조에서 명시하는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관해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국가(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포함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은행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보안, 법규준수, 교육 및 은행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와 은행간의 전화통화내역 및 이메일을 녹음, 기록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9) 은행은 본 웹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동의 하에 본 웹사이트상에서 쿠키(cookies) 또는 IP주소 추적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의 본 웹사이트 페이지 방문을 모니터링하고, 본 웹사이트 서비스를 개별고객의 필요에 맞추고, 본 웹사이트를 통한 브라우징을 추적 및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및 사용자이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쿠키(cookies)란 본 웹사이트 사용과 연관된 사용자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데이터 조각을 의미합니다. IP 주소가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링크될 수 있으며, 은행은 IP 주소를 추적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관한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본 항에서 명시하는 쿠키(cookies) 및 IP 주소 추적장치는 서비스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가 위 쿠키 및 IP주소 추적장치와 본 항에서 설명하는 목적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10) 은행(그 계열사 포함)은 고객의 역내 및 역외 본점,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관련 고객들”)에게 수시로 본 웹사이트(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은행(그 계열사 포함)이 관련 고객들(및 해당 관련 고객들의 수권 대리인들)에게 고객의 본 웹사이트 사용과 관련된 정보 및/또는 고객이 본 웹사이트를 통해 체결한 거래들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그 종류를 불문함)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7조 보장의 부인

(1) 본 웹사이트는 “있는 그대로” 제공될 뿐이며, 은행과 은행의 서비스제공업체는 (1) 본 웹사이트의 통용성, 정확성 또는 완전성, (2) 본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고객 등이 얻게 되는 결과 및 (3)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제3자 제공 콘텐츠에 관하여 진술이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은행은 회사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연구나 기타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나 의견을 업데이트하거나 해당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 뉴스, 회사결정사항 및 기타 시장관련 정보는 표시된 그대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직전일 영업종결 시점의 것이거나, 실시간이거나 또는 지연된 것일 수 있습니다.

(3)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행의 이사, 대리인, 직원이나 하도급자를 포함함)은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장 및 조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품질에 관한 보장이나 조건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하지 않음).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 따라, 그리고 해당 법령이나 규정(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은행은, 본 약관상 또는 해당 법령이나 규정상 은행이 명시적으로 인수한 채무나 의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사기, 고의적 불이행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 비용, 손해 또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제8조 책임의 제한

(1) 법률이나 본 약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원칙적으로 본 웹사이트의 사용이나 본 웹사이트에의 접근으로부터 기인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사고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i) 고객의 사용자 식별정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ii)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 (iii)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i) 고객이 권한 없는 자에게 사용자식별정보의 사용을 대여하거나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ii) 고객이 제3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식별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식별정보를 노출, 누설 또는 방치한 경우,
- (iii) 은행이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 (iv) 고객이 위 (iii)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a)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b)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2) 고의적 행위나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행의 이사, 대리인, 직원이나 하도급자를 포함함)이나 은행의 서비스제공업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종류를 불문한 손실, 손해 또는 청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i) 본 웹사이트상의 콘텐츠,
- (ii) 본 웹사이트상의 오류나 누락,
- (iii) 본 웹사이트의 사용이나 본 웹사이트에의 접근,
- (iv) 원인을 불문한 고객의 본 웹사이트에의 접근 또는 사용 불가능,
- (v) 은행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 또는 메시지에 대한 본 웹사이트의 전송 실패 또는 전송이나 수신 지연.

(3) 고의적 행위나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 및 은행의 서비스제공업체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다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i) 이익, 수익이나 저축 손실이나 기타 경제적 손실,
- (ii) 사업이나 영업권 손실,
- (iii) 데이터 손실이나 손상, (iv) 부수적 손실 또는 특별한 손실,
- (v) 가용시간의 낭비나 손실 또는
- (vi) 고객이 본 웹사이트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 손실이나 결과적 손실.

(4)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은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또는 인적 상해나 사망에 대한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5) 은행 및 은행의 서비스제공업체는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불가항력, 공공적대행위, 정부행위, 전기통신상의 오류, 거래소 또는 시장의 결정, 거래중지, 전염병, 테러행위, 번개나 전자기적 장애, 지진, 홍수 또는 기타 재난을 포함함)로부터 기인하는 본 약관상의 의무 미이행이나 이행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9조 배상 및 면책

본 약관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은행에게 초래되거나 은행이 입은 모든 청구, 소송, 요구, 절차, 손실, 책임, 손해, 비용 및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을 배상 및 면책하기로 합니다.

## 제10조. 상계

쌍방 당사자는 은행이 고객과 체결한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은행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이행기가 도래한 금원 또는 채무(성격, 통화, 발생 장소를 불문함)를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 해야 하는 금원 또는 채무(성격, 통화, 발생장소를 불문함)와 상계할 수 있음을 합의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쌍방

당사자는 상계와 관련한 본 조항이 쌍방 당사자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무와 관련된 것임을 합의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제11조 링크

본 웹사이트는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가 아닌 독립된 제3자가 제작한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의 소유자가 반드시 은행과 상업적 관계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제3자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가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이나 제공자를 추천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3자 웹사이트상의 의견이나 권고사항은 해당 제공자 측의 의견이나 권고사항으로서 은행이나 서비스제공업체의 의견이나 권고사항과는 무관합니다. 은행과 서비스제공업체는 본 웹사이트상의 링크를 통해 접근 할 수 있는 웹사이트상의 콘텐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2조. 외환 업무 관련 공개

고객이 은행과 본 웹사이트를 통해 외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은 은행이 외환 업무 고객들에게 고지한 공개 설명서([https://www.db.com/en/content/ Foreign-Exchange-Disclosures.htm](https://www.db.com/en/content/Foreign-Exchange-Disclosures.htm) 참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공개 설명서는 특히 은행이 고객 거래 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사용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관한 정보, 은행이 자신의 계산으로 다른 고객을 위해 수행하는 거래 활동이 외환 거래 관련 고객의 주문 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정보 및 외환 벤치마크에 관련된 주문이 어떻게 체결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위 웹사이트의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본 웹사이트를 통해 은행과 계속해서 외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이 본 공개 설명서 내용을 읽었으며 해당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제13조 해지

(1) 고객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i) ① 고객에 대한 파산, 회생, 해산 또는 청산절차의 신청 또는 청원 또는 ② 고객의 도산(만기 채무의 변제불능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이 발생한 경우 즉시; 또는

(ii) 해지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또는

(iii) ① 고객의 본 약정 위반, ② 고객의 재무상태 또는 본 약정 이행능력에 관한 중대한 불리한 변경 또는 ③ 본 약관 제2조 제2항 (ii)의 각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전에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2) 본 약관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요청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였거나 본 웹사이트상에서 제공되었던

컨텐츠(제3자 컨텐츠 포함) 및 기타 자료를 신속하게 은행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자료 일체를 반환 또는 파기하였음에 관하여 서면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i) 본 약관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본 웹사이트 접근권한은 즉시 중단되고; (ii) 본 약관의 해지는 본 웹사이트를 통해 이미 체결된 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이미 체결된 거래는 계속하여 본 약관에 의거 규율됨), 본 약관의 해지 이전에 체결한 거래를 완성 또는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상기 제11조 제3항 (i)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본 약관 해지 이후에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본 약관 제1조 제9항, 제3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3조는 사유를 불문하고 본 약관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제14조 회사 및 연락처 관련 세부사항**

본 웹사이트는 도이치은행의 지점인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지점소재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8층)이 제공합니다.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에 연락하고자 하시는 경우, 전화 +82 2 734 3505 또는 수신자부담(Toll Free) 00798 651 7262나 전자우편 autobahn.fx@db.com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15조 보안**

고객은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터넷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통한 전송(암호화되지 않은 형태일 수 있음)을 포함하며, 이러한 전송이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수단의 내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합니다. 위 전송은 서비스제공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통한 방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합리적인 보안 관련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인정하며, 고객은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전송하는 권한 없는 프로그램, 전자적 침해, 정보·데이터가 의도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해당 정보를 잘못된 방식으로 수령하거나 전달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제16조 양도, 하도급 및 위임**

본 약관은 은행 및 은행 그룹사, 서비스 제공업체 및 그 승계인과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은행 및 서비스 제공업체는 본 약관상 자신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본 약관상 그 의무 수행을 위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은행의 동의 없이 본 웹사이트 접근 및 이용에 관한 본 약관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은행의 동의 없는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제17조 개정

은행은 언제든지 본 약관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대한 개정은, 효력발생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한 달 전에(다만, 법령 개정에 따른 긴급한 필요한 의한 개정의 경우 그 효력발생 이후에 통지하는 것도 가능) 본 웹사이트에 게재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고객에게 통지될 것입니다.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위 효력발생예정일까지 고객은 기존의 계약 및 본 약관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본 약관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개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상기 개정의 효력발생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개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18조 기타 계약

본 약관은 이와 동일한 이전의 모든 약관에 우선하고 완전히 이를 대체합니다. 본 약관과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거나 제공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과 은행간에 체결된 기본계약, 기타 특정 계약간에 상충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19조 권리 불포기

은행이 본 약관상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체한 경우라도 은행이 해당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일회적/부분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도 추후/추가적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거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리 또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행사 포기가 있는 경우에도 본 약관상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수단에 대한 행사 포기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제20조 일부 유효

본 약관상의 조항이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능인 경우, 본 약관상의 다른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데 동의합니다.

만약 본 약관에서 제공되는 여러 언어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한국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 제22조 기밀유지

(1) 고객은 거래와 관련된 가격 또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은행 이외의 자에게 공개, 누설, 유포하거나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은행이 체결할 수 있는 거래의 가격 또는 기타 조건과 본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i) 본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ii) 해당 거래를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a) 규제당국의 요청, 영장 또는 법원 명령, 또는 기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b)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정보 또는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기타 정보를 은행 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본 약관에서 반대되는 내용이 있거나, 양 당사자간의 수시로 이루어지는 비공개합의, 비밀유지합의, 기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를 공개할 것에 동의합니다(“보고 동의”):

(i) 거래 및 유사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는 관계 법률, 규칙 또는 규정(적법하게 발행된 해석 지침, 자문서 또는 조건서 포함)에 의해 요구되거나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공개, 또는 관계 당국, 기구 또는 기관의 거래 및 유사 정보의 공개에 관한 명령, 요청, 또는 지침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공개(“보고 요구”), 또는 (ii) 타방 당사자의 본점, 지점 또는 계열사에게 공개; 타방 당사자 또는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사에 대한 서비스를 위탁받은 개인, 대리인, 제3자, 법인에 대한 공개; 거래소에 대한 공개;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공개; 또는 거래저장소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개(각 경우, 해당 보고 요구를 준수하기 위함).

본 조항의 목적상, “공개”는 공개, 보고, 보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3) 보고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개는 거래, 일방 당사자의 신분, 특정 거래 조건, 본 웹사이트를 수단으로 한 의사 교환에 대한 분쟁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는 관련 당사자가 속한 관할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차이가 있는 관할권의 대중 또는 수령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 동의는 당사자들간 공개에 관한 합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고 동의는 당사자들간에 언제나 유효하며, 본 약관의 해지 후에도 존속합니다. 보고 동의 조항의 수정 또는 해지는 당사자들간에 보고 동의를 특정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제23조 거래 기록 및 자료의 제공**

(1)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공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 및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에 대한 거래 기록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은행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기록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이 위 제1항에 따라 은행에 고객에 관한 거래 기록 및 자료를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역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24조 분쟁

(1) 고객이 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이 지정한 분쟁해결 담당자에게 해당 분쟁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위 제1항에 따른 분쟁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해당 분쟁의 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3) 은행은 분쟁해결 담당자나 그 부서의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본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  
준법감시부  
영풍빌딩 18층  
종로구 서린동 33  
서울시 110-752

전화: +82 2 724 4500

팩스: +82 2 736 3871

## 제25조. 기본계약

고객은 본 약관, 관련 기본계약, 관련 확인서가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합의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거래를 체결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본 약관의 어떤 조항도 거래에 관련된 기본계약의 조항을 대체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거래 당사자들이 본 웹사이트를 이용해 거래를 체결 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은행과 고객이 관련 거래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경우(상장 선물/옵션 거래 또는 채권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는 제외),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은행과 고객이 당사자 간의 첫번째 거래의 거래일(부록 10에 정의됨)에 다음과 같은 부록을 포함한 2002년 ISDA 기본계약 양식(이하 "ISDA 양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거래는 해당 계약 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 (a) ISDA 준거법은 영국 법률이고 (b) 해지통화(Termination Currency)는 미 달러화라는 조건만을 명시

(ii) ISDA "2002년 ISDA 기본계약에 대한 사용자 지침(User's Guide to the ISDA 2002 Master Agreement)"의 49페이지에 포함된 "배상대상세금(Indemnifiable Tax)"의 정의 조항을 추가

(iii) ISDA가 2003년 7월 15일에 발표한 별지 1 내지 별지 18(포함)가 첨부된 2002년 기본계약 프로토콜(2002 Master Agreement Protocol)을 포함

(iv) 해당 거래에 대한 확인서에 명시된 ISDA 양식 에 대한 기타 변경사항을 포함.

ISDA 양식 또는 기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가 발표한 양식의 계약이 본 확인서 체결 이후 당사자들 간 체결되는 경우, 해당 확인서는 해당 계약을 보충하고, 그 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고 그 조건에 따르게 되며, 그 체결 시 해당 계약에 포함되거나 참조로 포함된 모든 조항들은 해당 확인서를 규율하게 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약관에 명시된 ISDA 양식에 대한 변경사항 및 본 조항의 (i) 내지 (iv)에 명시된 조건은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 조항에 의해 대체됩니다.

## 제26조. 교란사유

통화교란사유(Currency Disruption Event)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한, 본 약관에 따라 체결된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급통화(Payment Currency)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본 목적을 위해 지정된 다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기술된 방법과 관계 없이 상환일 또는 결제일을 포함함). 해당 통화교란사유로 인해 지급통화로의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이 되거나 혹은 지급이 합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경우, 본 약관에 따라 체결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통화로 은행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본 제26조 관련 금액은 제외하며, 상환일 또는 결제일을 포함함)은, 은행의 선택에 따라, 해당 통화교란사유를 고려하여 해당 교란일(Disrupted Date)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은행의 재량으로 결정된 환율에 따라 기타 통화로 환전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a) 본 약관과 (b) 통화교란사유 또는 그 결과에 관련된 거래를 증빙하거나 확인하는 당사자들간의 다른 계약/서류 조항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위 계약/서류의 조건이 우선합니다.

본 제26조의 목적상:

“통화교란사유(Currency Disruption Event)”는 은행이 선의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사건 또는 정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i) 지급통화를 관련 관할(Relevant Jurisdiction)내 계좌에서 관련 관할 외부의 계좌로 전달하는 것 (ii) 지급통화를 관련 관할 외부 계좌에서 관련 관할 내부 계좌로 전달하는 것, (iii) 지급통화를 관련 관할 내 계좌들 상호간에 전달하는 것 (iv) 지급통화를 관련 관할 외부의 계좌들 상호간에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이 되거나 혹은 지급이 합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경우; 또는

(2) (i) 지급통화를 기타 통화로 전환하거나 기타 통화를 지급통화로 전환하는 것(각 경우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을 금지, 제한 또는 한정하거나 (ii)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라 관련 관할에 소재한 은행간 외환 시장(interbank 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기타 통화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거나, (iii)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라 은행의 관할 내에 소재한 은행간 외환 시장(interbank 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지급통화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지급통화(Payment Currency)”는 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지급금을 확인하는 관련 확인서에 명시된 통화 또는 관련 확인서에서 기준통화 또는 역외통화(non-deliverable currency)로 명시된 통화를 의미합니다.

“관련 관할(Relevant Jurisdiction)”은 지급 통화가 적법한 통화가 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기타 통화(Other Currency)”는 미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또는 유로화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은행이 자신의 재량으로 지급 하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통화를 의미합니다.

“교란일(Disrupted Date)”은 은행이 결정한 통화교란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 제27조 부록

부록 상의 조항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위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명시된 조건과 부록에 포함된 조건 간에 상충하는 바가 있는 경우 해당 부록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 부 록 1 외환 거래

### 제1부 Autobahn FX 거래

아래 추가 약정은 Autobahn 이용약관(“본 약관”)을 보충하여 그 일부를 구성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Autobahn 서비스(이하 “본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사용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거래들(이하 “거래”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 1. 일반 조항

##### (1) 사용 설명

고객은 은행이 준비하여 제공하거나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타 조건(이하 “사용 설명”이라 합니다)에 따라 본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상기 사용 설명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으로서 행위

고객과 은행이 별도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본 웹사이트의 사용 및 그 결과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있어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진술합니다.

##### (3) 결제; 주 계약

각 거래는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따라 결제되고 고객과 은행 간의 외국환 거래에 적용되는 주 계약에 의해 규율됩니다.

##### (4) 정의

당사자들은 본 약관에 따라 당사자들간 체결된 거래(전자메시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된 거래를 포함함)가, 별도로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i) 외환거래 또는 통화옵션거래(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이하 "ISDA", 이머징마켓 트레이더 협회(Emerging Markets Traders Association), 외환 위원회(Foreign Exchange Committee)에 의해 발행된 1998년 외환 및 통화옵션정의(1998 FX and Currency Option Definitions, 이하 "외환정의집", 별지 A 포함)의 정의에 따름)는 외환정의집을 그 확인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ii) 거래(2005년 ISDA가 발행한 상품정의집(2005 ISDA Commodity Definitions, "2005 상품정의집")의 정의에 따름)는 2005 상품정의집을 확인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됨

## 2. 거래

### (1) 호가

은행은 고객에게 거래통화(currency pairs)에 대한 지속적인 호가 정보(streaming price)를 외환 현물 및 선물 거래(본 약관의 목적상 각각을 “거래”라 함)와 관련하여 본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된 호가는 그 종료 시점 전까지 또는 은행이 달리 철회하는 시점 전까지 유효하게 거래 지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호가는 상기 시점 이후에는 거래 지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각 호가는 고객이 해당 거래통화와 결제 일자의 새로운 호가를 수락한 때에 종료됩니다. 상기 호가는 해당 거래의 유형(현물 및 선물), 만기 또는 결제 일자에 의해 은행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호가는 은행이 지정한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명목 원금으로 거래되는 거래의 지시에 이용됩니다.

고객은 본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통화 또는 결제일자를 지시하여 스트리밍 호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시스템은 한도초과 거래로 인식하게 됩니다. 은행은 자신의 고유재량으로 상기 요청에 응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 스트리밍 호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객은 상기 거래에 대하여 거래지시를 제출할 수 있는 가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응하여 은행이 호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은 차후에 그와 동일/상이한 거래통화 또는 결제일자에 대한 요청에 응하여 호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호가/최고한도액이 은행이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는 호가/최고한도액과 다를 수 있으며 통지 없이 철회·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은행은 고유재량으로 고객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통화 조합(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언제든지 평가일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호가 정보의 제공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 거래

고객은 은행이 정한 절차를 거쳐 본 시스템을 통해 거래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지시의 조건은 아래 명시된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은행이 본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 유형에 대한 호가를 제공하는 거래통화여야 합니다.
- 호가는 종료되거나 철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은행의 고유재량에 따라 종료된 호가에 대한 거래 체결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고객이 무시할 만한 작은 규모의 거래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종료된 호가에 대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명목 원금은 은행이 해당 거래 유형에 대하여 수시로 웹사이트를 통해 지정하는 최고 한도액 또는 지속적인 호가 정보 요청 시 허용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거래지시를 입력하기 전에 거래지시와 관련된 거래창 기타 서식의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위에 명시된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 지시를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고유재량으로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상기 거래지시를 수락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차후에 이와 같은 거래지시를 다시 수락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3) 거래지시

고객의 거래지시는 거래 체결의 청약을 구성하며 은행은 본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고유 재량으로 이를 체결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아래 명시된 경우 및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거래 지시가 본 약관에 명시된 제한 및 요건(위(2)항에 명시된 요건 포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호가가 종료되었거나 철회된 경우.
3. 은행이 거래지시의 조건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4. 은행이 거래지시에 명시된 거래에 관하여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신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5. 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관련 시장의 호가가 고객이 거래 내역을 요청한 시점과 은행이 거래 지시를 수령한 시점 사이에 중대하게 변경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지시 전송 오류를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은행이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 지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거래 지시는 은행에 의해 거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본 웹사이트상의 참고호가에 따라 거래체결을 위해 제출한 거래지시는, 기술적 문제 및 대기시간을 줄이고 산업내 모범사례에 따르기 위하여, 은행이 체결을 검토하기 전에 잠시 지연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이 참고호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호가철회로 인하여 거래지시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고객은 은행에게 현재 시점의 최신 호가에 기반하여 거래를 체결하도록 보충 거래지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 최신호가는 거래지시가 생성된 시점에 본 웹사이트에서 게시된 호가보다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와 동등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이 소재한 관할에서 관련 거래 유형에 대한 보충 거래지시 기능이 이용가능하고 고객에게 제공된 경우에 한합니다).

은행의 거래지시 체결(이는 은행이 거래지시를 수령하고 거래지시가 본 약관의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한 때에 이루어짐)은 은행과 고객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구성합니다. 은행은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에게 거래체결을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통지의 불이행 또는 지체가 동 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거래에 관한 기타 확인서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3. 주문

#### (1) 주문

고객은 사용 설명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본 웹사이트에 거래의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은행과의 거래체결을 위한 주문을 제출하거나 사전 주문을 수정(이하 각각 “주문”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고객의 거래체결 또는 거래수정에 대한 청약을 구성합니다. 또한, 고객은 본 웹사이트를 통해 기존 주문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고객에 의해 수정된 한도 내에서, 수정된 주문은 고객의 신규 주문으로 취급됩니다.

은행의 재량에 따라, 고객은 주문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체결(이하 “주문체결방식”이라 합니다)할 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체결 주문은 본 약관 및 사용 설명에 따라 본 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체결됩니다. 수동체결 주문은 은행의 재량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 관행에 의거하여 은행의 트레이더가 관리 및 체결하게 됩니다. 고객은 주문을 낸 이후에 본 웹사이트를 통해 은행에 통지하여 주문체결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은행이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는 주문체결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재량에 따라 주문체결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주문의 접수 또는 거절

은행은 재량에 따라 주문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분명히 하면, 주문 접수는 은행과 고객간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구성하지 않으며 은행은 고객과 거래를 체결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주문의 접수 또는 거절은 은행이 결정한 때에 유효하게 됩니다. 은행은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거래의 접수 또는 거절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그러한 통지의 불이행 또는 지체가 접수 또는 거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효력을 지체시키지 않습니다. 접수된 주문("접수된 주문")은 은행의 재량에 따라 사후에 고객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당 주문이 접수된 주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에 응하여 고객과 거래를 체결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3) 주문의 수정 또는 취소

본 웹사이트를 통해 또는 웹사이트에서 수정 또는 취소 기능이 이용 불가능 할 경우, 고객은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의 해당 거래 담당 트레이더 또는 영업(Sales)직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통신수단(이메일 포함)으로 주문의 체결 이전에 주문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유재량으로 주문 수정 또는 주문 취소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4) 체결

은행은 주문 접수 후 언제든지 고객이 지정한 체결 최종 시점("종료 시점") 전까지 또는 은행이 고객의 주문 수정 또는 취소 요청을 수락한 경우 그 전까지 접수된 주문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까지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해당 종료 시점에 종결됩니다. 은행에 의한 주문 체결(이는 해당 주문이 외국환 시장에서 -또는 은행의 기타 처리장소, 사무실 또는 계열회사에서- 체결된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은 해당 주문에 따른 고객과 은행간의 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구성합니다. 은행은 본 웹사이트를 통해 상기 거래 체결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통지의 불이행 또는 지체가 해당 거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5) 주문관리시스템

고객은 본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이 은행에 전송되도록 지정하는 주문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약관 제3조의 제1, 2, 3 및 4항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또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부적으로 주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 주문은 은행과의 외국환 거래 체결을 위한 요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거래 정보

## (1) 거래 기록; 주문 기록

은행은 체결된 주문을 포함하여 본 웹사이트에서 작성된 주문의 거래 상세 내역을 담고 있는 거래 기록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수락되었으나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의 상세 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주문 기록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거래와 관련한 서면 내역을 제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거래와 관련하여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서면 기록은 오로지 참고용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기존 거래에 대한 수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거래의 조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2) 데이터 자동전송

고객이 요청할 경우 은행은 고객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거래 자료를 자동전송(straight through processing of transaction data) 할 수 있습니다. 자동전송 된 정보(straight through processing feed)를 고객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본 시스템과 자신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간의 연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해당 미작동에 대해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를 자신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책임을 집니다.

## (3) 평가

평가는 본 웹사이트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오로지 고객의 이용 목적상 참고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달리 명시적으로 특기하지 않는 한, 이는 수시로 지정된 일자의 mid-market(중간호가) 수준의 예시적인 시장 호가를 의미합니다. 평가가 시장의 중간호가 수준을 기초로 하여 평가 당시 적용되는 거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은행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거래 규모, 시장 유동성 및/또는 자본 이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거래에 있어서 미래 시장 여건 및 내부 고유 모델에서 발생하는 파생 가치에 관한 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가정 및/또는 모델에 기초한 평가는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신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실제 조건이나 기존 외국환 거래가 청산 또는 처분(unwound)될 수 있는 실제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평가 내용을 제공합니다. 은행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평가를 산정하거나 유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에게 제공되어 고객 또는 여타 당사자가 사용한 평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결과적 또는 기타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보고된 정보

은행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거래 기록부나 기타 정보 출처에서 제시된 정보의 통용성,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 또는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수정 또는 업데이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5. 대리 거래

## (1) 본인으로서 행위하는 고객.

고객과 은행이 명시적으로 다르게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본 웹사이트 사용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행위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2) 본인 식별

고객이 본인("본인")을 대리하여 거래 관련 대리인("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경우에, 고객은 (i)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은행에게 어떤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대리인으로서 행위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목록을 서면으로 제공하고(해당 목록은 은행의 동의하에 수시로 수정될 수 있음) (ii) 해당 거래가 이행되는 날("거래일") 업무시간 종료 전까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특정 본인이 누구인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해당 본인(들)을 거래일 업무 종료 전까지 확인하지 못하거나 은행이 재량에 따라 대리인이 확인해준 본인(들)을 수락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해당 본인(들)과의 거래를 거절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A) 은행은 대리인에게 해당 거래를 거절하고 철회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신속히(거래일로부터 1 영업일 이내) 알리고, (B) 거래가 은행에 의해 거절되는 한도 내에서, 은행은 대체거래 체결 또는 헷지 거래 해지 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거래 거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리인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본인들의 재무상태 및 구조에 관한 정보를 본인들로부터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 (3) 다수의 본인

대리인이 한 명 이상의 본인을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과 은행은 해당 거래가 각기 별개의 개인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과 동일하게 본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취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i) 대리인이 위 (ii)항에 기술된 통지서와 함께 (한 명 이상의 본인들에 대하여 거래가 할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대리하는 각 개인들에게 할당되는 거래의 부분을 명시한 통지서를 은행에 제공하고; (ii) 각 본인에게 할당되는 개별 거래의 부분이 각기 별도의 거래로 간주된다는 것에 합의합니다. 고객은 본인 각자가 각 거래를 체결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은 본인 각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과 권한을 갖추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4) 본 제5조의 조항과 본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된 거래에 적용되는 기본 계약 조항간에 어떤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 계약 조항이 우선합니다.

## 제2부 CNY 역외거래들

고객과 은행간의 CNY 역외거래시스템(아래 정의 참조)의 이용시 Autobahn 이용약관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 1. 정의

다음 정의는 이 제2부 목적을 위하여 적용됩니다:

“CNY” 및 **인민폐**”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법정 통화를 의미합니다.

“CNY 역외거래”란 홍콩 계좌 또는 은행과 고객(총칭하여 “**당사자들**”, 각각 “**당사자**”라 함)간에 합의하는 기타 중국외 계좌로의 CNY 또는 인민폐 지급이 수반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ISDA 기본계약”란 2002 ISDA기본계약(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제정) 양식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CNY 역외거래 조건”이란 ISDA기본계약 조건과 본 이용약관 제2부에 명시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CNY 부속조건”이란 CNY 통화사유, 가격출처장애 또는 그 결과와 관련되는 CNY 역외거래들을 위한 추가 조건들을 명시한 내용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속 서신을 의미합니다.

“**중국**”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며, 제2부 취지상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은 제외합니다.

“**거래확인서**”이란 은행과 고객간의 CNY 역외거래를 입증하거나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2. 해석

이하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들은 ISDA기본계약에서 정의한 의미를 갖습니다.

1998 외환통화옵션정의집(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이머징시장트레이더협회(Emerging Markets Traders Association) 및 외국환위원회(Foreign Exchange Committee) 제정)(“**외환정의집**”)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 및 각 조항은 CNY 역외거래에 적용됩니다.

(a) ISDA 기본계약과 외환정의집이 상충하는 경우 외환정의집이 우선하며, (b) 외환정의집과 CNY 역외거래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CNY 역외거래조건이 우선하며, (c) CNY 역외거래조건과 CNY 부속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CNY 부속조건이 우선하며, (d) CNY 역외거래조건, CNY 부속조건(존재하는 경우에 한함)과 거래확인서(존재하는 경우에 한함)가 상충하는 경우 거래확인서 조건이 우선합니다.

### 3. CNY 역외거래관련 지급

CNY 역외거래에 대하여 인민폐로 이루어지는 지급은 적용 법규에 의거하여 홍콩의 인민폐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CNY 역외거래에 대하여 다른 수단(은행어음, 수표나 환어음 또는 중국에서의 은행계좌송금 등)을 이용하여 인민폐 지급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각 당사자는 CNY 역외거래 체결일에 CNY 역외거래에 대한 지급 목적을 위하여 혹은 일반적으로 인민폐 자금의 이용이 장래 제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4. 기타 조건

하기 조항은 고객과 은행간의 모든 CNY 역외거래들에 적용됩니다:

만일 (i) CNY 역외거래에 대한 환율결정을 목적으로 현물환율이 결정되는 날, 또는 (ii) 홍콩계좌나 기타 중국외 계좌(은행과 고객이 서로 합의한 계좌여야 함)로 이루어지는 CNY나 인민폐 지급이 CNY 역외거래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날에 CNY 통화사유가 발생, 지속되어 CNY 역외거래에 대한 지급인 또는 지급수령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애대체방식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a) **정산유예:** CNY 통화사유가 연속하여 최대유예일수(아래 정의 참고)까지 지속되지 않는 한 CNY 통화사유가 해소된 날 이후 2 영업일까지 관련 지급이 유예됩니다. CNY 통화사유에 대한 최대유예일수 경과 후에는 익영업일에 대체결제방식(Non-Deliverable Substitute) 방식이 적용됩니다.

(b) **대체결제(Non-Deliverable Substitute):** 인민폐 지급 의무는 미달러화 지급 의무로 대체됩니다(인민폐 금액을 외환평가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 미달러화 금액으로 환전함).

여기서:

“CNY **통화사유**”란 CNY 비유동성, CNY 교환불능 또는 CNY 이전불능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CNY **비유동성**”이란 관련 금액(명목금액, 쿨통화금액, 풋통화금액 또는 기타 관련 금액(해당하는 경우)등)이 인민폐나 기타 통화(단일 거래에서의 금액 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횡수의 거래일 경우에는 합산한 총 금액)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콩 인민폐 거래소에서 위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 인민폐에 대한 기관의 매도호가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율**”이란, 아래 가격출처장애 조항을 전제로, 어느 외환평가일에 대하여, 2 홍콩영업일의 정산을 위하여 미화 1달러에 대한 중국 인민폐 금액으로 나타나는 중국 인민폐/미국 달러화에 대한 공식적인 고정환율로서, 이는 해당 외환평가일 현재 홍콩시간 오전10시경 Bloomberg Screen “CNH” <Curncy> DES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가격출처장애**”란 외환평가일(또는 이와 다르다면 외환평가일에 대한 환율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관련 가격출처에서 발표하거나 고시하는 날) 현재 환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외환평가일**”이란 환율 결정을 위하여 계산대리인이 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만일 미예정 휴일의 발생으로 인하여 외환평가예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외환평가일은 외환평가예정일 이후 미예정 휴일이 아닌 최초 영업일로 합니다. 다만, 만일 외환평가일이 해당 외환평가예정일 이후 연속하여 14일 이내(이러한 기간을 “유예기간”이라 함)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 직후 미예정 휴일이 없었을 경우 영업일이 되었을 날을 외환평가일로 간주합니다.

“**정부기관**”이란 사실상의 혹은 정당한 정부당국(또는 그 부속기관이나 그 산하단체), 법원, 사법기관, 행정당국이나 기타 정부당국 또는 기관(공적 또는 사적 불문)으로서 중국과 홍콩에서 금융시장의 규제기능을 가진 기관(중앙은행 포함)을 의미합니다.

“CNY **전환불능(Inconvertibility)**”이란 CNY 역외거래 당사자가 정부기관이 제정한 법규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 외에(위 법규나 규칙이 거래일 이후에 제정되었거나, CNY 역외거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 법규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함), 당해 CNY 역외거래의 당사자가 해당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CNY 역외 거래에 따른 지급금 또는 기타 계산대리인이 정하는 금액(위 계산대리인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과 선의로 행동하여야 함)을 홍콩의 일반 인민폐 거래소에서 당해 당사자가 인민폐를 다른 통화로, 혹은 다른 통화를 인민폐로 환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사유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CNY **이전불능(Non-Transferability)**”이란 CNY 역외거래 당사자가 정부기관이 제정한 법규나 규칙의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 외에(위 법규나 규칙이 거래일 이후에 제정되었거나,



CNY 역외거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 법규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함), 당해 CNY 역외거래 당사자가 홍콩내 계좌간에, 또는 홍콩내 계좌에서 홍콩외 계좌로, 또는 홍콩외 계좌에서 홍콩내 계좌로의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5. 환율에 대한 가격출처장애 조항

외국환평가일에 가격출처장애가 발생하여 존속하는 한 순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장애대체 방법이 적용됩니다:

(i) 가격출처장애에 대한 평가 유예:	가격출처장애가 최대유예일수 동안 연속하여 지속되지 않는 한(지속일수는 가격출처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외환평가일이 되었을 날로부터 산정함), 환율은 가격출처장애가 해소되는 날의 익영업일에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율은 최대유예일수가 경과한 직후의 영업일에 대체참조가격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ii) 대체참조가격(Fallback Reference Price):	외환평가일에 관하여, 계산대리인은 환율 관련 호가를 제공할 해당 시장내 딜러 5곳을 선의로 선정합니다. 환율은 5개 환율호가 정보 중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제외한 나머지 호가들의 산술평균값으로 결정됩니다. 3개 이상 5개 미만의 호가가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호가들을 산술평균하여 환율이 결정됩니다. 3개 미만이 제공되면 아래 (iii)호에 따라 대체검사평가유예와 거래소의 계산대리인 환율 결정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iii) 대체검사평가 유예("Fallback Survey Valuation Postponement") 및 계산대리인 환율 결정	(i) 가격출처장애에 따른 평가유예, (ii) 미예정 휴일에 따른 유예기간 또는 최종 유예기간(해당하는 경우), 또는 (iii) 누적사유 종료 이후 3번째 영업일(또는 미예정 휴일이 아니라면 영업일이 되었을 날) 이전에 대체참조가격(Fallback Reference Price)이 없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선의와 고유재량에 의하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당해 일(해당 외환평가일로 간주되는 날)에 환율을 결정합니다.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 (v)항의 누적사유는 본 조항에 따른 평가유예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iv) 당사자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해지(No Fault	만일 계산대리인이 상기 "대체검사평가유예" 조항에 따른 방법으로 환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가격출처장애는 거래에 대한 추가 해지사유를 구성하며 이에 따

Termination)	라 양당사자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Affected Parties)가 됩니다.
(v) 누적사유:	아래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i) 미예정 휴일을 이유로 평가가 유예되거나 (ii) 평가유예가 발생하는 총 기간((i)와 (ii)가 연속하여 함께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은 연속하여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x) 위 14일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미예정 휴일이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경우, 그 해당 일 (단, 그 해당일은 미예정 휴일이 없었다면 영업일이 되었을 날임을 전제로 함)을 평가일로 간주하며, (y) 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가격출처장애가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경우로서 그 가격출처장애가 없었다면 현물 환율이 결정될 수 있었을 경우에는, 평가유예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적용가능한)환율은 다음 단계의 장애 대체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대유예일수 (Maximum Days of Postponement)	14일
미예정 휴일 (Unscheduled Holidays):	영업일이 아닌 날로서, 외환평가일 이전 2영업일 베이징 시간 오전 9시 이후까지 (공지 또는 기타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통해) 시장이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님을 알지 못한 날을 의미합니다.

## 6. 고객의 추가 진술

고객은 다음을 추가적으로 진술 보장합니다: 고객은 “역내 기관(onshore institution)” 또는 “역내 개인(onshore individual)”이 아닙니다(각 용어는 중국 외환관리규정 고시 52호(Circular 52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에서 표시되거나 사용되는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